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보조사업의 제한 사유를 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기준액을 정함(안 제4조)

라.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마.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06. 5. 10 ~ 5. 30(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구비를 재원으로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 안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및 제4조(보조기준액)의 규정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안으로 하여 상한선을 두었으며
- 안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는 보조금 신청서의 제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며
- 안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기능), 제9조(위원회의 구성)는 보조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는 보조금을 사전 승인없이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고
- 안 제13조(보고 및 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 특히, 안 제4조(보조기준액)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은 없으나 부산시의 경우 기 제정한 모든 구가 구세의 3%(연제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3% 이내) 범위로 정한 것에 기준을 둔 것으로 보아지며

- 우리구의 연간 보조기준액(3% 적용시)은, 2006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구세 176억 \times 0.03 = 5.28억원 정도로 예상됨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열악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